

프리스타일예금 상품설명서 (기업금융고객용)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프리스타일예금
- 상품특징 :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거치식예금 상품입니다. 이자지급방식을 만기 이자지급식과 매월 이자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총 3회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

2 거래 조건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|---|
| 가입대상 | ■ 법인고객 |
| 상품종류 | ■ 거치식 예금 |
| 거래방법 | ■ 신규 : 영업점을 통해 가능 ■ 해지 : 영업점을 통해 가능 |
| 가입금액 | ■ 100 만원 이상 |
| 계약기간 | ■ 만기지급식 : 1개월 이상 3년 이내 일 단위 ■ 이자지급식 : 3개월 이상 3년 이내 일 단위 |
| 이자지급시기 | ■ 상품구분별 이자지급방법 (단, 이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) (1) 만기지급식 : 예금 해지 시에 일괄 지급함. (2) 이자지급식(매 1개월, 2개월 3개월) :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총이자를 이자지급 주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매 주기에 지급함. 단, 1개월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계좌 해지 시에 원금과 함께 지급함. |

| | <p>주기별 이자 = 프리스타일예금 총이자 x 이자지급 주기 ÷ 12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원금은 예금 해지 신청 시에 지급하며, 이 때 미지급 이자가 존재한다면 함께 지급합니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|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<p>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.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, 출금,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기본이율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본 예금은 계약기간 및 이자지급시기에 따라 이율이 적용됩니다. (연, 세전, 2025년 07월 11일 현재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7 786 1481 1133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계약기간</th> <th colspan="2">이율</th> </tr> <tr> <th>만기 이자지급식</th> <th>매월 이자지급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 이상 3개월 미만</td> <td>0.20%</td> <td>0.10%</td> </tr> <tr> <td>3개월 이상 6개월 미만</td> <td>0.25%</td> <td>0.15%</td> </tr> <tr> <td>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</td> <td>0.30%</td> <td>0.20%</td> </tr> <tr> <td>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</td> <td>0.35%</td> <td>0.25%</td> </tr> <tr> <td>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</td> <td>0.35%</td> <td>0.25%</td> </tr> <tr> <td>36개월</td> <td>0.35%</td> <td>0.2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계약기간 | 이율 | | 만기 이자지급식 | 매월 이자지급식 |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| 0.20% | 0.10% |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| 0.25% | 0.15% |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0.30% | 0.20% |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 0.35% | 0.25% |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| 0.35% | 0.25% | 36개월 | 0.35% | 0.25% |
| 계약기간 | 이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만기 이자지급식 | 매월 이자지급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| 0.20% | 0.10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| 0.25% | 0.15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0.30% | 0.20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 0.35% | 0.25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| 0.35% | 0.25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6개월 | 0.35% | 0.25%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우대이율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사항 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만기 후 이율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만기 후 1개월 이내 : 만기일 당시 고시한 1개월 일반 정기예금 고시금리 ■ 만기 후 1개월 초과 : 0.1% (연, 세전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만기이자 산출근거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[이자계산 산식] 신규금액 × 약정이율 × 약정기간(일수) ÷ 365 <div data-bbox="395 1514 1295 1680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규 금액 × 약정 이율 × 약정기간(일수) ÷ 365</p> </div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■ 중도해지이자 = 원금 x 중도해지이율 x 예치일수 ÷ 365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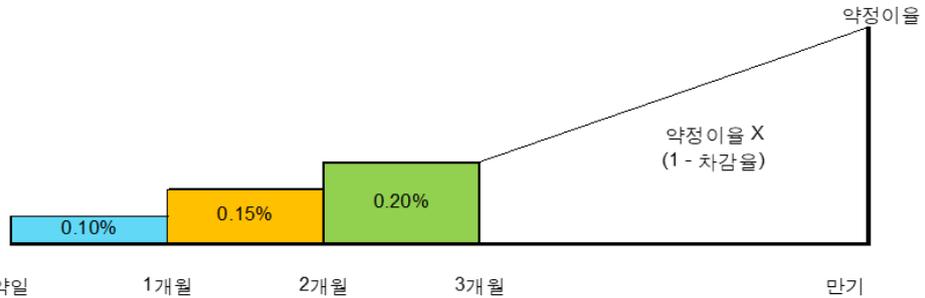
(연, 세전, 2025년 07월 11일 현재)

| 예치기간 | 중도해지이율 |
|---------------|---|
| 1개월 미만 | 0.10% |
|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| 0.15% |
|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| 0.20% |
| 3개월 이상 | <p>약정이율 x (1-차감율)</p> <p>(i) 차감율 = K x (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잔존 월수) ÷ (계약 월수)</p> <p>(ii) K=1.0</p> <p>(iii)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 처리함.</p> <p><차감율 산출 예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일 : 2017년 9월 10일 • 예금계약기간 : 12개월 • 중도해지 신청일 : 2018년 8월 16일 • 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잔존월수 : 1개월(25일을 올림 처리) • 입금일부터 만기일까지 월수 : 12개월 <p>⇒ 차감율 = 1.0 x 1 ÷ 12 = 0.08</p> |

중도해지 이율

■ 중도해지이자 = 신규금액 x 중도해지 이자율 x 예치기간(일수) ÷ 365 일

[중도해지이자율 적용방법]



※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방법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율이 아닙니다.

중도해지 이자 산출근거

예금자보호 여부



■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 억원까지"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세제혜택

불가능

■ 해당사항 없음

재예치

가능

■ 이 예금은 재예치가 가능합니다.

부분인출

가능

■ **이자지급식은 부분인출이 불가**하며, 만기지급식의 경우 만기해지 포함 3 회 가능합니다. 단, 부분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분인출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

| | | |
|-----------|----|---|
| | |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부분인출 신청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 |
| 양도 및 담보제공 |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 예금은 양도가 가능합니다. ■ 이 예금은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. |
| 계약해지 방법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업금융지점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. |
| 위법계약 해지권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|
| 휴면예금 및 출연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"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"에 출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■ 휴면예금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. |
| 연계·제휴 서비스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사항 없음 |

3 유의 사항

- 만기일 이전에 분할해지를 신청하는 경우, 분할해지 신청금액에 대해서 분할해지일 전일까지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이자지급식 상품을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해지 신청하는 경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총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합니다.
- **금리의 변경**
 상기 금리는 은행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리가 변경일부부터 적용됩니다. 변경된 금리는 "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 2 항" 및 "현지약관 제 9 조 3 항"에 의거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**약관의 변경**
 이 상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은행의 사정에 의해 상품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 관련 사항을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약관

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“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2 항” 및 “현지약관 제 22 조 제 2 항” (2014년 9월 7일 이전 계좌 개설의 경우 “현지약관 제 21 조 제 2 항”)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

• **적용 약관**

| 계좌 개설 시점 | 통장 방식 | 무통장 방식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2014년 9월 7일 이전 | | 상품별 특약 일반 계좌 약관 현지 약관 |
| 2014년 9월 8일 이후, 2020년 2월 23일 이전 | | 상품별 특약 현지 약관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약관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약관 |
| 2020년 2월 24일 이후 | | 고객안내서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약관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약관 |

* 다만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고객이 기존 약관을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함을 승인하는 경우 새로운 약관이 적용됩니다

- 이 상품은 한국씨티은행 기업자금상품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**고객센터(1588-70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citibank.co.kr)**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** 또는 **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부록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| 용어 | 설명 |
|------|---|
| 압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|
| 가압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 |
| 질권설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,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|
| 출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 |
| 경과기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|